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등 6개 기관에 신설조직 성과평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8조 관련)

1. 외교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지역협력과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나. 동북·중앙아시아국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동북·중앙아시아국 심의관	0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아세안국 동남아2과	6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마. 국제안보국 수출통제·제재과	4명 (5등급 또는 6등급 3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바. 개발협력국 개발전략·민간협력과	5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8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사.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아. 개발협력정책관	0명	2027년 3월 31일까지

2. 외교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가.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13명 (3등급 또는 4등급 13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나.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15명 (3등급 또는 4등급 15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8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라.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7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	2024년 12월 31일까지